

11. 宅地所有上限에 관한 法律施行令中 改正令(案)立法豫告

建設部公告 第1992-198號 1992.12.31

1. 개정목적

택지소유상한제의 운영 및 금년도에 최초로 시행한 초과소유부담금 부과업무의 추진과정에서 일부 택지취득허가 기준 및 부담등 부과제외택지의 범위 등이 현실에 맞지 않고 법령에 규정할 사항을 지침으로 보완하여 운영함으로써 불합리한 제도 운영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주택임대사업의 경우 현재 법률에서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스스로 건축하여 임대하기 위한 택지만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던 것을 임대사업자 또는 기업이 기 건축된 국민주택규모(25.7평)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영세민 또는 종업원에 임대할 수 있도록 함.

나.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용 택지는 현재 장학법인만 증여받을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학교법인도 학교

운영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수익사업을 위한 택지를 증여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교육사업을 지원함.

다. 가스충전소등 폭발위험물취급소의 경우 현재 건축물부속토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등에 의한 사업허가 기준면적의 1.1배이내의토지로 조정하여 법령상호간의 모순을 제거함

라. 사택은 현재 25.7평이내의 주택을 건축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택지만을 취득할수 있도록 하고 있던 것을 교회, 학교등 비영리법인의 사택에 대하여는 면적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필요한 크기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

마.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택지를 취득한 경우에만 2년간 이용·개발기간을 부여하고 있던 것을 법령등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된 군사시설보호

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안의 기소유 택지등이 구역조정, 사업완료 등으로 건축이 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2년이내의 이용·개발기간을 부여함.

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산업합리화 조치에 따라 처분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어 이용·개발이 금지된 택지를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 산업합리화조치의 목적달성을 지원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중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3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부장관(참조:토지구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및 주소

씨앗뿌린 2백만호 열매맺는 내집의꿈